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9. 4.(화)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부위원장 (1인)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 욱 부위원장님께서는 국회 공무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4차 및 제4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4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안건 중 <의결안건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견진술 관련 안건인 <의결안건 나>, <의결안건 다>를 심의한 후 <의결안건 가> 및 <보고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47-428~443)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은 피심인 중 1개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등을 위반한 16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배경은 개인정보 불법 보관, 불법 이용 등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2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21개 사업자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보관을 한 사업자가 16개사, 개인정보

불법 이용한 사업자가 4개사, 국외이전을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입니다. <다> 주요경과입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는 8월 6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21개사 중 1등텔레콤 등 16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주)동화통신 등 2개사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오정보통신 등 3개사는 폐업 또는 해당사이트 폐쇄로 인해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1번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는 영어교재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 15개 사업자는 통신판매점입니다. <2>번 (주)고려정보통신은 종업원 수 75명이고 53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주)서희정보는 종업원 수 50명으로 79억원의 매출액입니다. 6번 (주)송림정보통신은 75명의 종업원 그리고 249억원의 매출액입니다. 9번 (주)신세계정보통신은 32명의 종업원, 85억원의 매출액입니다. 11번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는 37명의 종업원, 8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 (주)유원컴은 6명의 종업원, 5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번 오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주)투비소프트는 종업원 수 5명 그리고 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업자가 5개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사업자가 중복 포함해서 4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접속기록 위반은 2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 위반은 중복 포함해서 7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물리적 접근 방지 위반은 5개사,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은 14개사, 그리고 국외이전 고지를 위반한 사업자는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 1개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제출의견으로 세부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고,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는 조사 착수 전 위반사항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요청하였고, 1등텔레콤 등 15개사도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주)투비소프트의 경우 의견진술을 요청하였고, 오늘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의견진술인의 진술을 들으시고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시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보는데 3페이지 <15>번 (주)투비소프트를 보면 매출액이 7억원이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하지만 4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8,600만원이지요? 3페이지 보시면 7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자리에 있는 자료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전체 매출액이 2018년 4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8,600만원이고, 금년 6월 기준으로 보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영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 부분은 의견진술인이 직접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 형편이 어려워서 거의 폐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투비소프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전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심인 (주)투비소프트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투비소프트가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 관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투비소프트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확인하였기에, 지난 7월 17일 (주)투비소프트에 관련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주)투비소프트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이신 황용연 님 맞습니까?

○ 황용연 (주)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먼저, 영업총괄이사이신 황용연 님께서 이번 과태료(안)와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용연 이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용연 (주)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저희가 4월 12일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사 받을 당시에 여기 조사받은 내용을 봤을 때 암호화를 해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암호화를 한 이유는 저희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24개월 동안은 통신사로부터 민원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정보 없이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명을 찾아서 민원을 막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막지 않으면 이것이 패널티 형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24개월 약정 동안 무조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막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일반 별표 표시해서 24개월치에 대한 것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보험을 끊어서 1일 이내에 그것을 막지 못하면 패널티가 부과

되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통신은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예 정보통신 분야는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받은 내용이 통신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권을 갖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거래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사업을 정보통신 분야는 거의 99.9%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저희가 대표이사 빼고 5명의 직원이 있는데 8월 6일부로 3명은 휴직 중이고 저도 현재는 휴직 중인데 오늘 진술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 맡았던 담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진술하러 제가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100만원도 엄청 큰 상태라서, 저도 급여가 2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국민연금부터 해서 4대 보험도 밀린 상태라서 그것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현실로서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황용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본 과태료 처분 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견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매출액이 7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연매출이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연간 매출액이지요?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작년 매출액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접을 정도로 전체 매출액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올해부터 조금 전체 시장이 그렇지만 통신 시장이 엄청 좋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열 군데 중 네 군데는 폐업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뉴스에 다른 업종인 음식점들도 열 군데 중 아홉 군데가 폐업하고 있다고 나오듯이 통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 1월부터 엄청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받고 나서 그것이 통신사에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은

보지 않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저희 잘못으로 되기 때문에, 잘못 있겠지요. 당연히 저희 잘못이 있지요.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거래중지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겹쳐서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4월에는 8,600만원, 다음 달에는 3,400만원 반 토막보다 더 줄어 들고, 다시 6월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7월, 8월은 어떻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8월 매출은 정확하게 1,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것은 9월이나 10월을 넘기지 못하면 확실하게 폐업 조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분은 급여가 지급됐는데 저와 제 밑에 부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월급이 제일 높는데 그 친구도 휴직 중이고 실제로 2개월 급여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도 줄 수 있는 매출이 아니니까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영업을 굉장히 부진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급여도 못 주고 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4대 보험은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정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2년 계약기간 동안은 무조건 보관할 수밖에 없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민원을 막아야 하니까요.

○ 김석진 상임위원

- 민원을 막아야 하니까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정보통신망법으로 보면 위반인데 저희 쪽에서는 실제로 통신사와 유대성에 대한 부분은 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을 즉각 막지 못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큰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다고 따로 숨겨서 보관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처리하였습니다. 4월 12일에 조사 나왔을 때 다 삭제하였고, 지금도 문제가 뭐냐 하면 대리점에서 저희 쪽에 '해지 건이 있어서 패널티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것인지 모르겠다', '막지 않으면 179만원을 우리에게 보증보험 처리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일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영업 때문에 청주에 내려가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삭제하라고 해서 DB까지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 막았습니다. 우리 건인지도 모르겠고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영업한 건인지, 다른 곳이 영업한 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무처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점에서는 민원 때문에라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이런 영업점과 법과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통신 판매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고도 민원이 제기 될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선주영 사무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통신사로 접수가 됩니다. 통신사가 해당 대리점에게 이것이것에 대해 가입사실이 있는지, 또 부가서비스 가입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대리점단에서의 행위가 끝나고 판매점과 대리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상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리점단에서 민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투비소프트사에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아닙니다. 지금 통신단은 상관없지만 발표하신 분은 대리점과 저희 판매점과의 관계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전산상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지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통신사에서 내려 준 전산이 있고 판매점은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영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대리점이 예를 들어 우리 것이 아닌데 '너희가 영업한 것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명을 누가 하지요?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실은 6개월, 1년치를 '우리가 영업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일선 영업점과 대리점 간 정보관리 문제에 허점이 드러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영업점은 그런 고충이 있고 또 보관하지 않으면 민원을 막을 수 없다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대리점에서는 어느 판매점인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저희는 그 전산을 못 봤으니까 알 수 없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판매점에서는 모르고 있더라도 대리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런데 대리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뢰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그렇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를 들어 대리점에서 하는 일이...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저희도 한 번은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라서 아는데 '이것 너희 것이야'라고 해서 우리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너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고 비용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 말을 믿고 '너희 것이야'라고 했을 때 그냥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간에 죄송한데 '민원', '민원' 말씀하시는데 어떤 민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고객이 예를 들어 내가 요금제를 이렇게 가입했는데 할부금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25% 할인을 받고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출고가가 얼마다, 우리는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전산상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라인 서식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고객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입력하고 나서 '나 이것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신사는 뭐냐 하면 '고객 말이 옳으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싫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너희가 못 막으면 고객이 이야기한 대로 해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신사는 고객 편이지 저희 편이 아닙니다. 온라인 서식지에 있는 대로 기입을 본인이 했으면 그것을 통신사가 우리를 막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잘 들었고, 어쨌든 이것이 현장과 법을 지키는 부분과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100%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보관 규칙을 정해 주시면 현실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안 되면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대리점과 통신사와 밀단까지 현실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민원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영업점은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통신사에서는 고객 편이니까 '어쨌든 당신네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잘못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선 판매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지요. 그런데 대부분 영업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저희는 실질적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처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하면 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엑셀 보관을 하든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한번 당한 사람은 당연히 엑셀 보관을 하겠지요. 그러면 찾을 수 없겠지요. 가지고 있지만 전산상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보관방법으로 보관하고 있겠지요. 그것 아니고서는 자기네가

알 수 없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한 가지만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말씀하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사님, 민원 처리를 위해 그동안 쪽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투비소프트의 경우에 연간 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연간 민원이 한 달에 실제로 보면 많이 들어올 때는 3건 정도 들어오고….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한 달에 최대 3건이면 1년에 30여건인데 30여건 민원처리를 위해 4만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투비소프트 개인정보 보관이 4만건이지 않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리고 민원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조사관 말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를 다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어떤 개인정보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여기에 나와 있지만 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암호화한 내용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마스킹 했을 뿐이지, DB상에서는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아닙니다. 다 삭제되었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삭제는 조사 뒤에 한 것이고요.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DB단에서도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DB단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여기에서 별도로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마스킹 처리되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그래서 이것을 매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길X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마스킹 처리가 의미 없는 것이지요. 결국 매핑해서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상당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신 것이지요?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인정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실태를 아냐, 모르냐, 또 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유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주민번호가 없으면 가입자에 대한 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계좌번호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나 이름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꼭 주민번호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관해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적절하지 않은 방식, 즉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저희들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지요?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대리점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간 관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사님은 이통사 본사나 대리점에 대해 판매점은 을, 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들로 인한 민원처리 방식은 저희들이 이통사나 대리점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법 위반 사유가 조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사님의 답답한 부분들은 이해되는데 충분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입자에 민감한, 또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리점에서 요금제 관련된 부분, 할부 관련된 부분이라면 추후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판매점 입장에서는 어떤 가입자인지, 대리점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조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은 김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업 직전까지 갈 정도까지 어렵다니까 제가 들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입장에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나름 조사와 제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통사와 판매점 그리고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이통사 본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 대리점이 책임져야 할 부분 그리고 판매점이 책임지고 응대해야 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방향을 말씀드리면 대리점에서 해피콜을 한다든지, 그것으로 증명서류를 한다면 저희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뒤에 책임도 지지 않고 그것으로 증명된다면 어차피 고객이 고객센터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 소상공인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협의될지 안 될지는 내용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제가 조서관 나왔을 때 주무관님께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은 위생 관련해서 그 사람들 위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교육시키고 여기에서 주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실제로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은 판매점은 영세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도하는, 만약 사전승낙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도 와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질문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제 생각에 이런 일이 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저희가 개인정보 법규 위반이나 단말기유통법상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통사 본사에 대리점과 판매점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본사와 대리점과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점검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그러면 아예 양성화해서 국가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영업 사정이 어렵고 거의 폐업 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셨는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사님 회사를 통해 가입했다면 제 주민등록번호와 신상정보가 컴퓨터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불안합니다. 투비소프트사에서 고의로 유출시키지는 않겠지만 해커가 침입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 정보가 시중에 유포되고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불안감을 모든 소비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바로 파기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지금은 다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십시오. 지금은 다 했지만 한 2년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인식을 바꾸고 어려운 사정은 어려운 사정대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황용연 ㈜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 예.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말씀들을 길게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에서 암호화 부분만 하더라도 일단 개인정보 취급자 비밀번호조차 안전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당 부분이 설령 시스템이 있어도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투비소프트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전송구간도 암호화하지 않고 다 전송했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위반으로 파악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면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황용현**

- 이번에 잘 공부해서 4월 10일 이후에 다 처리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투비소프트 영업총괄이사 황용현**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미인 지한 부분이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 통해 법 규제나 아까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공부해서 일주일 이내 다 처리해서 지금은 다 폐기 처리하고, 지금은 법 시행대로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휴직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8월 6일부터 휴직 중이어서 집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할 일은 이것이라고 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지금 법 위반에 대한 것은 제가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답답하다 보니까 말 표현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반성하고 있고 수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용도 없고 지금은 아예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 수정·보완 처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 주셔서 아주 고맙고 감사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투비소프트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의결안건 나>에 대한 검토의견 및 시정조치(안)를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시정명령은 1등텔레콤 등 16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1> 위반행위 즉시 중지, <2>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시정명령 이행 결과 제출, 과태료 부과 (주)고려정보통신 등 15개사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주)송림정보통신 등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감경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투비소프트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개정된 과태료 부과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주)송림정보통신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 (주)투비소프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주)고려정보통신 등 12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입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이고 조사과정 중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주)고려정보통신과 위반행위가 3개인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 및 (주)원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가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의 감경입니다.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투비소프트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 중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와 (주)유원컴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20%인 2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명품텔레콤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0만원, (주)고려정보통신, (주)원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국외이전 고지를 위반한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가중 및 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착수 이전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인 12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 내역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 끝단 오른쪽에 보시면 총 과태료 금액은 15개사 1억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별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73호1의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등텔레콤 등 14개사는 조사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별칙 조항에 해당하지만 개인정보 보유 건수가 4만건 이하이고,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작년 12월 제48차, 그리고 금년 2월 제9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되고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 10만건 이상 파기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 통보 후 이행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진술 관련해서 유출이나 침해사고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진술인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자료를 마련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투비소프트에서 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영업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배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곧 폐업을 한다니 그 부분은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4대 보험도 지급 못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혹시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조금 경감시킬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도 보고 말미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선 판매점 업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하반기에 많은 업주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서 법 준수해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 과징금을 매긴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일선 영업점, 판매점에서는 법 준수 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진술인을 통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비중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려정보통신을 보니까 작년 매출액이 약 534억원쯤 됩니다. 대단히 큰 대규모 영업장으로 종업원 숫자도 가장 많은 1위 기업인데 1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보고를 들어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조사하는 중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만 미파기 건수가 3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여기에 숫자를 썼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실은 영업규모로 보나 또 매출액 규모로 보나 대단히 많은 미파기 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 삭제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등 조사방해와 관련해서 최대로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이 50%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해서 적용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도 1,500만원인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과징금을 매겨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벌칙에 우리가 벌금이나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위 형사처벌인데 고려정보통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벌칙에는 해당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엄중하게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까지 개인정보 미파기가 10만건 이상 과다한 경우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고려정보통신 경우에는 큰 대리점에 해당되지만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는 35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수사 의뢰하면 다른 13개 사업자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조사 중에 삭제한 행위에 대해 50% 과태료를 가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왜 여기에 주목하느냐 하면 증거인멸 조사방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패널티가 없는 것입니까? 맹점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태료 50%를 가중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도 진술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투비소프트에서도 조사 나갔을 때 이것을 빨리 파기하지 않으면 당한다고 해서 폐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 시점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했고, 투비소프트에는 시정을 즉시 하라는 저희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들이 맹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서희정보도 미파기 건수가 5,000건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수 산출이 불가하다, 한

5개 박스 분량으로 추정된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것은 거의 근사치로 해놓은 것이고 5개 박스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류문치가 들어 있었는데 한 박스를 열어서 일일이 조사관이 모두 세어봤다고 합니다. 세어보니까 그것이 1,000건 정도가 되니까 5개 박스를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행정 처벌하면서 일종의 추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업자 교육, 이용자 교육을 저희 방통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년도에는 사업자 교육을 약 48,000여명을 했고, 작년도에는 정확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7월 실적만 7,200명 하고, 이용자 교육은 '16년도에 약 19만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통신 판매점, 대리점에 대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교육이 안 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교육자료를 만들고 통신사나 대리점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수십만 개에 이르는 삼천리 방방곡곡의 일선 판매점을 다 교육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을 개시할 때 어차피 통신사 내지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시작할 때 통신사에서 교육자료, 그다음에 대리점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시키도록 해야지, 우리가 무슨 행정력이 닿는다고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을 통신사에 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어떻게 남의 귀한 신상정보를, 요즘 폴로 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암호화해서 처리하지요. 아까 진술인 이야기도 그렇고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분만의 생각이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신사에 강하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판매점의 경우 사전승낙제를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개설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십시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가서 조사하는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유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굉장히 악질적인 방해입니다. 그런데 530억원 매출하는 데서 과태료 500만원 더 받고 처분이 종결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매출이 아무리 큰 사업자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나오면 증거를 없애면 일부 있는 것만 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처분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자문관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일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행위의 경우 금융범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다 포렌식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조사 과정에서 특히 증거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법률자문관님,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실 것 혹시 있으십니까?

○ 광영환 법률자문관

-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신병을 잡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형의 고려사유가 되긴 하는데, 일단 범상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규율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 최소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정보통신 처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판매점이 열리는 순간에 그것을 숙지할 수 있게 우리가 대리점을 통해, 통신사를 통해 알리도록 하거나, 우리가 가서 자료를 나누어 주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측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술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판매점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통신사 간에 책임회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리점이나 통신사

에서 판매점에 책임을 묻거나 무엇을 떠넘기려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 개인정보를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접 일은 아니겠지만 개선이 있는지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너무 적은 액수가 부과된 것 같은데,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는데 겨우 500만원 정도 부과되면 그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좀 더 가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장님, 아까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 여기에 와서 진술까지 하고 갔는데 혹시 더 감경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업이 곧 폐업 직전인데 과태료가 1,400만원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1,400만원입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과태료 처분받은 사업자가 모두 15개 사업자 인데 투비소프트는 와서 직접 의견진술을 하였지만 의견만 낸 다른 사업자들도 15개 사업자 중 투비소프트를 포함해서 5개 사업자가 모두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경영 악화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곧 폐업 예정’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의견취지를 반영해서 다음에 처분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 관련된 자료를 사업자가 원하면 제출토록 해서 경영 부분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분들 폐업하고 또 이름 바꾸고 다른데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얼마든지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폐업하고 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다. (주)한웰이쇼핑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47-444)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주)한웰이쇼핑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한웰이쇼핑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관련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금년 4월 11일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해 오에 따라 금년 5월 21일까지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까지 피심인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다이소몰을 통해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매출액은 2017년도 약 1,1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다이소몰’ 매출액은 220억원입니다. 두 번째 <표>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보시면 휴면회원정보를 포함해서 약 24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 경로입니다. 피심인의 개인정보시스템은 쇼핑몰 관리자페이지, 협력사 관리자페이지, 포장재 관리자페이지, DB 관리자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심인이 평소 이용하는 쇼핑몰 관리자페이지와 협력사 관리자페이지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그리고 접속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와 DB 관리자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 있는 웹 로그 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상의 해커는 협력업체에게 포장재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계정과 웹을 통해 다이소몰 회원 DB를 관리할 수 있는 DB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을 금년 4월 7일 23시 17분경 이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탈취하였습니다. 이후 미상의 해커는 탈취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관리자페이지와 DB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또 미상의 해커는 2018년 4월 9일 0시 51분경 관리자페이지에서 다이소몰의 유효한 회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여 아이디, 이름, 포인트 내용 등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내역입니다. 피심인이 다이소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정보 2.18MB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2.18MB의 파일은 해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건수는 산출이 불가합니다. 금년 5월 21일 방통위 조사 시 유출건수 확인을 위해 해커가 다운로드한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해 보았지만 유출 당시와 이용자의 포인트 적립 이력이 달라, 즉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2MB만 다운로드되었습니다. 다운로드된 1.2MB 용량 기준으로 7,707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중복을 제거한 후 1,952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출된 용량은 그 2배인 2.18MB이므로 최소 1,952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상의 해커는 ‘18년 4월 9일 0시 44분경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같은 날 2시 47분경 DB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심인의 시스템에 웹방화벽 로그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외부 유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도와 아래 피심인 유출 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위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위반 내용입니다. 피심인은 2018년 4월 17일 기준으로 관리자페이지와 DB 관리자페이지에

는 별도의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4항입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망 분리 위반 내용입니다. 피심인은 2018년 4월 17일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약 240만명이며,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2017년 매출액이 약 222억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고시 제4조제6항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위반 내용입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시 제5조제1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안전한 인증수단 관련해서 피심인은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와 DB관리자페이지의 경우 개발 이후 실제 업무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심인이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와 DB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수용하였습니다. 또 망분리PC에서는 웹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트만을 허용하고 메일을 비롯한 여타의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포트들을 차단하여 외부와의 접속을 최소화하였지만 망분리PC로부터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미흡함이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터넷망을 완전히 차단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 역시 불수용하였습니다. 또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여 포장재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불수용했고, 해당 관리자페이지는 접속기록이 남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접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와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제출의견과 검토의견은 <붙임 4>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 명령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① 위반행위 즉시 중지, ②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③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④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입니다. <나> 과징금 부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피심인의 다이소몰 서비스 관련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환산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189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아래 <표>에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점,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한 2억 8,3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행위 기간은 2년 초과이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특별히 적용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총 2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 과태료도 병과하여 부과하겠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감경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감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총 1,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이행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프라인에 다이소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의 웹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다이소로 되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상 다이소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성다이소'라는 별도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별도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다이소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회사는 방금 말씀드린 '한웰이쇼핑'이라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며 회원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완전히 별개의 다른 회사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둘의 관계는 관계사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별개 사업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프라인의 다이소는 아주 유명하고, 이것이 실질적 매출이 2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일단 사업자는 다르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고 관계사라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관계사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웰이쇼핑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1,000억원의 매출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커가 4월 7일에 침범해서 계정을 탈취하고 거의 하루 지나서 4월 9일 0시에 또 직접 다운로드해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2.18MB가 유출됐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약 절반밖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보름 지나서 조사에 착수해서 시현해 보니까 결국은 1.2MB만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한 달 보름이 지난 것은 아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신고된 날로부터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신고된 날로부터는 바로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절반만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을 제거하면 2,000명 정도가 채 안 되는 부분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한 사실이 있지만 로그기록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가 유출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커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과징금에 보면 필수적 감경을 50% 해 줬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태료는 소기업 같은 경우 50%, 중기업은 20%만 감경하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3년간 과징금이 없었기 때문에 필수적 감경으로 50% 감경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서로 규정이 다른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법에 필수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재량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이고 유명한 다이소와 관련 있는 관계사인데 이것을 50%까지 우리가 감경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법상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의무 감경이기 때문에 저희의 재량에 의해 가중·감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50% 감경해야 합니까? 3년 동안 과징금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면 무조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는 50% 가중했네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에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서 개인정보를 빼갑니다. 이번 경우도 보면 심지어 이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자들의 접속기록도 보관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니 한번 뚫렸다 하면 모든 DB에 접근이 가능하고, 유출이 가능합니다. 시간대를 보면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서 대략 23시 이후 그다음에 01시 이후, 02시 이후, 쉽게 말하면 퇴근해서 잠자고 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라는 분들의 계정들로 사내에서 접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 해외에서 접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물론 이것이 내부 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관리자 계정으로 특정시간대, 퇴근 이후 시간대나 심야, 새벽시간대에 접속하면 그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 구축이 안 됩니까?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해외에서 접속하면 통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직장이나 집 외 장소에서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할 경우 반드시 이중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통보가 메일로 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계정이 쉽게 탈취가 되고, 또 외부에서 접속되는데 사내든 회사 외부에 있는 관리자에게 전혀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증수단을 거칠 수 있도록 하면, 다 차단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업무 일과 중에는 인증을 한 단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업무 외 시간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인증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람시스템 가능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월이쇼핑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쇼핑몰 관리자페이지, 협력사페이지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재 관리자페이지와 DB관리자페이지는 2014년도 개발하고 나서 해당 관리자페이지가 있는지 조차 해당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2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2개에 대해서는 안전한 인증수단 접속기록을 하면서 개발되었지만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자만 알고 회사 측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커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페이지 내에 접속해서 탈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떤 경우든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어서 근무 외 시간, 또 외부에서 접속되는 것은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최근에 저희가 제재했던 부분들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보면 건건이 깨집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KT 대량 개인정보 유출 건이 항소심에서 또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서 뒤집혀집니다. 대략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사업자들에게 대해 침익적인 제재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틈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지난번에 KT 재판도 보고 와서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현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정의 부분을 포함해서 계속 이슈가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거나 피해 규모를 규명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관리자페이지를 개발해 놓고 나서 실제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심한 일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개발자는 개발해 놓고, 한웰이쇼핑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어느 시점에 퇴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뒤 담당자들은 알 수 없고 운영도 되지 않았던 사태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자체가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개인정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활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관리자들이 이렇게 소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방금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상 허점이 있는 부분은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에도 나가 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교육만 가지고 안 되고 EU의 GDPR처럼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체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과 운영, 법·제도를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을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매출이 1,000억원 넘는 회사가 쉽게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47-427)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의결주문입니다. ‘(주)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주)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법령 준수 등 아래 박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허가신청 공고와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결과, (주)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주), (주)스마트온커뮤니케이션, (주)지바이크 등 총 4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4개 법인에 대한 주요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영업, 기술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8년 7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씩 적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4개 신청법인 중 (주)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주)는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주)스마트온커뮤니케이션, (주)지바이크는 자금조달 계획 근거 미흡 등의 사유로 총점 7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단하였습니다. 신청법인의 세부사항별 평가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허가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일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이유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3월 말까지 미디어렐 6개사로부터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았고, 4월부터 6월까지 영업보고서를 검증했습니다.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정된 2017년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에 따라 2018년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가> 지상파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렐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동 미디어렐의 지상파방송광고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산정결과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2.4114%, (주)미디어크리에이트는 9.1192%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는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입니다. 정의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원대상 지역·중소방송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동 미디어렐의 지상파방송광고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산정결과입니다. 부산MBC 등 38개 사업자의 산정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예고 및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중 위원회 의결 및 관보게재를 통하고, 10월 말에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에는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사업자별 최소 지원규모 세부산정결과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행정예고(안) 그다음에 관련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광고시장이 대단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지역방송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면 KOBACO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결합판매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도 광고는 점점 커지는데 결합판매는 조금씩 늘려서 주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아닙니다. 저희는 5년간 평균 지원 비율을 평균 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약간 올라간 것이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KOBACO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에는 올라간 비율이 0.0097%이고, 그다음에 미디어크리에이트는 0.0059%이기 때문에 올라간 비율 자체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KOBACO는 12.4% 결합판매 평균 비율이었고, SBS가 중심이 된 미디어크리에이트는 9% 정도입니다. 이렇게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결합판매에 할당된 사업자가 KOBACO에는 종교방송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는 지역민방과 OB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방송 등에 할당된 금액이 좀 더 크고 여기에는 지역MBC도 같이 포함됩니다. KOBACO는 MBC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MBC와 종교방송은 KOBACO의 결합판매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민방과 OBS가 결합판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상 지역MBC와 종교방송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과율이 약 3%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은 늘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소·지역방송사들이 결합판매 비율을 높여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또 OBS는 마이크에 들어가 있지만 판매비율을 좀 더 높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방송들의 호소가 어느 정도로 배려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KOBACO나 마이크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실태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특히 지역민방을 팔고 있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 간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민방에서는 결합판매 비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체를 묶어서 전체 광고판매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민방에는 97% 그다음에 OBS는 95%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BS의 몫이 좀 더 커지고 지역민방의 몫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방에서는 그것을 정률제로 해 달라, 100%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만 SBS와 마이크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서대로 97%를 보장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실태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역·중소방송사의 청을 들어줄 만큼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어려운데 조금씩 몫을 더 떼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방송광고정책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가 자꾸 지역방송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것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합의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계속 해 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3%와 5%라는 간극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다만, 직접적으로 방통위가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계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거래에 우리가 뛰어 들어서 직접 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없고, 이것을 방송광고정책 전반적인 검토 속에서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보는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97%까지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고판매 제도를 개선할 때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방송사들 간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쪽에 배려가 더 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이익을 제기하는 구조 때문에 서로 발목 잡는 형국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것은 전파료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 전파료 배분이 지역민방 간 이전 구조, MBC에서 하던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인구 변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일부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합의하기 위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사업자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방송사업자 간 광고 몫을 배분하는 영역의 문제라서 저희가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중재에 나설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연장선상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 관련해서 지역민방이나 지역MBC의 노사 어느 쪽에서라도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난번에도 지역민방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낸 적도 있고, 또 지역방송 노조에서 직접 저에게 한번 찾아와서 건의서를 내고 간 바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서 요지와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했는지, 아니면 미디어렐사 KOBACO나 미크리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것 관련해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SBS 의견 듣고, 미크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지역민방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간극을 좁히려고 중재를 했는데 각자 입장이 팽팽해서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철저히 제로섬입니다. 본사에서 많이 가져가면 지역 몫이 줄어들고, 지역에 많이 내려 보내면 본사의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민방이든 지역MBC든 방송사 간에도 어느 한쪽을 높여주면 다른 쪽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지금 전파료 포함해서 배분기준도 옛날 것입니다. 인구의 변동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산업구조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광고를 배분하는 기준의 객관성·투명성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매년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미디어렐사에 보내고 본사로 하여금 또 지역사 간 갈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이러한 처리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상당히 큰 현안에 대해 답을 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법을 내기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를 계속 문제인 상태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저도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다면 시원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 관련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여럿 걸쳐 있기 때문에 해법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미디어랩 체제 운영이나 결합판매 방식이나 이런 전반적인 정책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런 식의 결합판매를 하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조사한 바 없지요? 잘 모르시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들어본 바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합판매라고 하지만 '나는 CBS에게만 하겠다'는 광고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KOBACO 같은 또는 SBS 광고를 대행하는 데서 '당신은 여기와 같이 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까? 가령 광고주가 나서서 자청해서 '나는 CBS 외 무엇무엇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대행사 측에서 여기여기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각 방송사가 얼마나 자생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그런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미디어랩사에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미디어랩사가 팔린 결과를 남겨놓긴 하지만 팔기 전에 어떤 형태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다 자료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고청약이 들어왔을 때 KBS 것을 살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 'CBS 것도 사야 됩니다' 해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팔면 그 배분비율을 정해서 그 결과를 남겨놓긴 하지만 처음에 '내가 지상파TV 것만 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에 관한 자료, 또는 '종교방송 라디오만 사겠습니다' 하는 그 자료들은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분해서 있을지는...

○ 이효성 위원장

- 저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런 자료가 다 보고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한국의 특수한 광고판매방식인데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끌고 갈 것입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특히 종교방송의 경우 결합판매 비율이 높는데 보통 70~80%가 다 결합판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종교방송은 결합판매 비율이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도 이미 우리나라 미디어랩 체제에 따른 광고결합판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사실 끼워 팔기이지 않습니까? 말이 결합판매지, 정말 잘 안 팔리는 상품을 그냥 끼워서 파는 것인데, 소위 정치자금 성금을 낼 때 지정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탁한 사람이 '이 돈은 어디 누구에게 써 달라'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야 광고효과도 있고, 또 광고주는 철저하게 시청률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저기 지정으로 자기는 광고를 넣고 싶은데 강제로 막 끼워 팔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학자로서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송광고 정책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주도 원치 않은 것인데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생력이 없는 방송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안고 가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지역성이나 또는 취약매체에게 지원은 하되, 특히 광고는 어떤 재원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가야 하지, 어떤 목적에 의해 시장 왜곡 현상을 일으키면서까지 또 광고주 돈을 주는 사람의 뜻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뜻과 다르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지간 결합판매, 소위 끼워 팔기의 판매비율도 조정되어야 하고 95%, 97% 보장해 주겠다는 것도 지금은 메스를 가해서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몇 십 년 지나면 제로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손을 대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광고정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저는 이것을 연구반이라도 만들어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리가 관행을 일시에 바꾸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우리 광고제도가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한 순간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방송계 광고현실로 볼 때 언제까지나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자생력들을 자꾸 갖추어야 되는데 방송광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지상파광고가 1년에 1,600억원씩 평균 빠지는데 한 10년이면 1조 6,000억원이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그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이런 제도, 여기에서 그냥 1년 넘기고, 1년 또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새로운 방송광고 시장에 대한 적응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각 자생력도 우리가 파악되어야 어떤 조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랑 KNN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 자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묶어서 나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을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당장 어떻게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우 급변하는 방송광고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방송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면 지원, 또는 제도개선이면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자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도 한번 미디어랩에게 부탁해서 특정 방송사를 지정해서 광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각사마다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미디어랩에 그런 자료를 요구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중재를 해서 다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안 되겠다.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책기구로서도 큰 고민인데 미리부터 정책기구가 알아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런 자료 중 하나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1년에 1,600억원씩 빠지는데, 지금 1조 4,000억원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10년이면 다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꼭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부 다 OTT를 볼 때 어떻게 생존하느냐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게 보고 우리가 방송광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그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광고판매 제도 개선이나 광고 제도 개선, 그리고 중소·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려운 쪽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합판매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은 DMB는 광고판매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것도 녹여서 검토해야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데 광고시장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협찬 쪽으로 많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것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이 매년 아우성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우성이 더 세지고 그다음에 더 세질 텐데 관행적으로 한 해, 한 해 넘기는 것으로는 앞으로 생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나>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2018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제작역량 평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하였고, 8월 9일에 김석진 상임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목적은 현재 등록대상 방송사용사업자, 즉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PP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 운영 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방송채널은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가·승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회계분리가 어려운 채널이나 공공채널 또는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 종교 및 성인채널과 같이 평가의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채널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대상 구분입니다. 방송사업자의 규모 및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채널을 전년도와 같이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분리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각 그룹 내 공급분야 특성에 따라 3개의 공급분야, A, B, C로 구분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송신·재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소PP 채널이 되겠습니다. 공급분야를 가, 나 그룹 공히 PP채널이 기획·제작·편성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급분야 A, B, C에서 공급분야 A는 경제정보나 운동경기 등 현장중계 위주로 하는 방송분야가 되겠고, 공급분야 B는 오락프로그램, 공급분야 C는 교양, 학습이나 생활정보 프로그램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3개의 구성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원 경쟁력의 세부 구성요인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경쟁력, 그리고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에서는 제작과 유통 경쟁력, 그리고 성과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경쟁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산출은 가 그룹과 나 그룹 각각 공급분야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매우우수가 15%, 우수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시를 보면, 다만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2개 등급, 즉 매우우수나 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룹별로 2개 등급에, 즉 매우우수와 우수등급의 최저점수 및 채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점수나 채널수를 고려하여 제작역량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공개 및 활용입니다. 가 그룹과 나 그룹의 공급분야별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을 공개하고, 방송대상 시상식에 특별상을 수여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제작역량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공급분야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 방식 도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분야에 따라 A, B, C 3개 분야로 나누는데 유료PP의 특성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역시 PP채널의 장르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을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먼저 제작비와 관련해서는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제작비 규모 평가 배점이 현재 200점인데 이를 150점으로 하향하되, 전년대비 제작비 증가분을 평가하는 항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콘텐츠 제작 부분은 '신규 콘텐츠 제작' 평가 시 적용한 제작유형이 있습니다. 그 가중치가 자체제작은 5, 공동외주제작 3, 구매 후 제작은 1인데 공동외주제작에 대해서도 이러한 PP들의 제작 여건을 보면 동일하게 자체제작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신기술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정했던 HD제작 신기술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전본시 진출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해외시장 판매량' 평가항목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에 평가할 때 단순 참석이나 방문도 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외시장 판매량 평가 항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시청자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각 PP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자사 시청점유율'을 평가하는 항목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수상실적'도 시상처와 함께 수상하는 상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즉, 대상이나 우수상 이러한 점수 차이를 두었습니다. 기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배점 구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0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평가자료 접수 및 분석을 9월 10일부터 자료 접수기간을 10월 5일까지 약 4주간의 기간을 두고 10월, 11월을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 방통위원회에 평가결과 결과 보고 및 발표를 각각 12월에 진행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작역량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평가 방식대로 간다면 계속 매우우수, 우수 받는 PP들이 계속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는 소재가 돈 되는 소재, 또 인기 있는 소재, 스포츠나 오락채널 등 여기에만 계속 우수채널로 자꾸 선정되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비록 규모는 영세하고 중소기업체지만 그래도 창의력을 갖고 있는, 제작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자는 산정방식을 바꿔보자고 해서 그동안 한 4차례 연구반에서 회합을 해서 계속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가, 나 그룹으로만 구분했는데 예를 들면 큰 방송사, 작은 방송사 이렇게 가, 나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거기에 방송 소재가 되는 장르에 따라 공급분야로 해서 3분야를 A, B, C로 또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 없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C그룹에서도 우수채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배점방식과 세부항목을 많이 디테일하게 해서 14항목으로 배점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더 많이 늘렸고, 배점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분야를 꼭 3개로만 한정해야 합니까? 장르가 공급분야 A에 증권, 부동산, 재테크는 묶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스포츠, 게임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다큐, 문화예술, 교육, 과학, 여행, 낚시, 등산, 법률, 건강, 소비자, 노인 등이 있는데 여행, 낚시, 등산, 스포츠, 게임 오히려 이렇게 별도로 하나 더 묶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공급분야 A는 주로 중계방송 위주로 하는, 경제정보도 대부분 증권시장을 대부분 중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역시 중계 위주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그룹별로 했습니다. 공급분야 B는 연예, 오락으로 해서 딱 특성화가 되는데 나머지 공급분야 C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생활정보, 교양, 학습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서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개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저도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폐회】